

『구미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와 건축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건축위원회 규정 정비

- 미관지구 심의 내용 삭제 및 소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

(안 제4조제1항, 제8조제3항)
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(안 제5조제6항)

나.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개정(안 제16조)

다.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면제를 위한 단서 신설(안 제21조)

- 라.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구조를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
완화(안 제22조제2항제6호)
- 마. 실내건축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7조)
- 바. 도로 접도의무 예외 건축물에 종묘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추가
(안 제32조)
- 사.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
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(안 제37조제3항제2호)
- 아.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신설 (안 제39조)
- 자.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신설(안 제41조)
- 차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·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,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써,
-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구조를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완화,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실내건축 점검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허가인 경우 수수료 면제를 위한 단서를 신설하는 등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이 반영된 안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됨.